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787 호

2007년 12월 26일 금요일

— 차 례 —

조 례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2007-879호(남동구 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3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2007-880호(남동구사무의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10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2007-881호(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2007-882호(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2007-883호(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2007-884호(남동구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8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2007-885호(남동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20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2007-886호(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2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2007-887호(남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2007-888호(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2007-889호(남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9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2007-890호(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32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2007-891호(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35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2007-892호(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38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2007-893호(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3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 집 : 문 화 홍 보 실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제21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7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87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
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립된 맑은터전 남동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이하 “협의
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이념으
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남동의제21”이라 함은 지역의 주민·기업·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주민·기업·구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모든 개발은 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개발사업을 의미하며 다음세대와 미래의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한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구청장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의제21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맑은터전 남동의제21의 추진 및 평가
2. 맑은터전 남동의제21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3. 맑은터전 남동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5.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6. 기타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민, 기업 및 구가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공동의장단 : 주민·기업·구의 대표 각 1인으로 구성된 3인의 공동의장을 두며, 주민대표와 기업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구의 대표는 부구청장으로 한다.
2. 당연직위원 : 관련분야 실·과장과 의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3. 위촉직위원 : 1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주민·기업을 대표할 수 있고, 남동의제21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자로서 공동의장이 위촉하는 자

② 협의회는 3인의 공동의장 중에서 선출한 1인의 상임의장을 두어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게 하며, 상임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7조(임기) 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해촉) 상임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장기불참 등으로 “남동의제21”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었거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경우

제9조(총회) ① 총회는 공동의장단을 비롯하여 본 협의회에 참여하는 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상임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총회에서는 상임의장 및 주민대표·기업대표 선출과 남동의제 실천에

관한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의결하며, 추진사업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한다.

- ④ 운영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는 연간 사업계획과 실적을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총회에 보고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상임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남동의제21 실천의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7. 사무국장 임·면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의회 주요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제12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사업을 전문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각 분과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 내에서 선출한 위원장과 간사를 두며, 당연직인 실·과장은 관련 분야별 분과위원회에 소속된다.

- ③ 각 분과위원회는 남동의제21 실천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조사, 연구 및 홍보, 주민의견 수렴 등의 활동을 실시한다.

- ④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3조(사무국) ①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구 청사 내에 상설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② 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상임의장이 임명한다.

④ 구청장은 사무국에 대하여 구의 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결)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상임의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중 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 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3장 재정지원 등

제19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협회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회 및 사무국의 운영비
2. 남동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0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회회에 대한 보조금은 신청에 의하여 반기별로 지급한다.

② 협회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회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구청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21조(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회회 운영 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회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협회회 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회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협회회의 구성 이전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제21추진협의회”가 결정 및 집행한 사항은 본 협회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에서 선택한 의제를 실천할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를 구성(전환)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남동구 건설과 미래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의 목적, 남동의제21의 정의, 사업내용
-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사무국의 설치
- 경비의 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위탁촉진
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7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880호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하고,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1호)의 개정
에 따라 조례상의 인용조항을 개정법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여 정
확하고 합법적인 조례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인용조항을 개정법령에 맞추어 개정 (제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7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88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4조, 제106조 내지 제108
조”를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13조, 제115조 내지 제117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제1항”을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를 “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2007. 5. 11. 법률 제8423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2007. 10. 4. 대통령령 제20306호)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인용조항을 개정법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여 정확하고 합법적인 조례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인용조항을 개정된 조항으로 개정 (제1조)
- 지방자치법 인용조항을 개정된 조항으로 개정 (제9조)
-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인용조항을 개정된 조항으로 개정 (제1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7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88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 및 제95조”를 “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및 제104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2007. 5. 11. 법률 제8423호)에 따라 조례상의 인용조항을 개정법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여 정확하고 합법적인 조례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인용조항을 개정된 조항으로 개정 (제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7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88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2007. 5. 11. 법률 제8423호)에 따라 조례상의 인용조항을 개정법률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여 정확하고 합법적인 조례운영을 도모하여 내실있는 기금관리를 통한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인용조항을 개정된 조항으로 개정 (제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7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884호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2007. 5. 11. 법률 제8423호)에 따라 조례상의 인용조항을 개정법률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여 정확하고 합법적인 조례운영을 통하여 지방법무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인용조항을 개정된 조항으로 개정 (제3조)
- 지방자치법 인용조항을 개정된 조항으로 개정 (제7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7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88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를 “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2조(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인 수) 중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을 “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2007. 5. 11. 법률 제8423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2007. 10. 4. 대통령령 제20306호)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인용조항을 개정법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 참여를 통한 구민 신뢰도 향상을 도모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인용조항을 개정된 조항으로 개정 (제1조)
- 지방자치법 인용조항을 개정된 조항으로 개정 (제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7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88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0조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을 “법 제3조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중 “남동구소속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남동구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 중 “남동구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남동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남동구의회 2차 정례회의에 전년도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직자 재산의 계층적 심사를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관할이 일부 변경되고, 연1회 연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에 신설됨에 따라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공직자재산등록 업무의 적정한 처리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관할대상을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로 변경 (제3조)
- 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사항 추가 (제5조의2)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7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88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를 “ 「지방
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중 “법 제13조의4”를 “법 제1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2007. 5. 11. 법률 제8423호)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인용조항을 개정법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여 정확하고 합법적인 조례운영을 통한 공직침범도 향상을 도모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인용조항을 개정된 조항으로 개정 (제1조)
- 지방자치법 인용조항을 개정된 조항으로 개정 (제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7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88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관련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관별 ·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소	동
총 계	801	518	19	45	16	203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08	465	13	42	15	173
3급	1	1				
4급	5	3	1	1		
5급	45	20	2	5	1	17
6급	142	96	3	6	3	34
7급	202	147	6	8	4	37
8급	216	141	1	14	6	54
9급	97	57		8	1	31
별정직 계	1	1				
7급상당	1	1				
기능직 계	91	51	6	3	1	30
기능6급	3	3				
기능7급	5	4				1
기능8급	12	10	2			
기능9급	26	15	4	2		5
기능10급	45	19	-	1	1	2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07. 6. 27.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소 건강증진과의 신설과 관련, 행정인력을 보강하여 구민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3조 관련 별표의 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정원조정
 - '총계'란 본청 519명을 518명으로, 직속기관 44명을 45명으로 함
 - '일반직 계'란 본청 466명을 465명으로, 직속기관 41명을 42명으로 하고,
 - '7급 소계'란 본청 148명을 147명으로, 직속기관 7명을 8명으로 조정.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7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88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및 제2조(소재지) 중 “동사무소”를 “동의 사무소”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구청 및 동의 사무소 소재지(제2조 관련)

구 분	소 재 지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 88 (만수동)
구월1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점9길 16 (구월동)
구월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46 (구월동)
구월3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나무6길 40 (구월동)
구월4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심길 7 (구월동)
간석1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양지말9길 36 (간석동)
간석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8길 11 (간석동)
간석3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고개길 36 (간석동)
간석4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일9길 7 (간석동)
만수1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로 1181 (만수동)
만수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광명길 10 (만수동)
만수3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호길 21 (만수동)
만수4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주공안길 8 (만수동)
만수5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진주4길 21 (만수동)
만수6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2길 2 (만수동)
장수서창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곡길 54 (서창동)
남촌도림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당재길 41 (남촌동)
논현고잔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길 54 (논현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논현고잔동 주민센터의 신축·이전에 따라 현재의 주소로 소재지를 개정하는 동시에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새로운 주소체계로 동의 사무소의 위치를 표기하고, 「행정자치부 동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계획」에 의거, 관련 조례에 표시된 동사무소의 표기를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논현고잔동 주민센터의 소재지 변경
- 남동구청 및 동의 사무소의 주소지를 새주소체계로 변경
-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의 사무소”로 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7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89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제6조본문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동조제5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하며, 동조제6호 “「도서관법 및 도서관진흥법」에 의한 도서관”을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으로 하고, 동조제7호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을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를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제42조제1항”을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임대사업자가”를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제1호·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으로 하며, 동조제2항 중 “임대사업자가”를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제1호·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으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부동산”을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08년도 「구세감면조례표준안」 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7년 10월 5일 시달됨에 따라,
- 현행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 및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관련조항 감면요건 개정 (제5조의2)
-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서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대상사업 및 감면율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감면규정 신설 (제8조의2)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노인가
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7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89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자 중 실
질적으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
득 노인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
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남동구 지역
가입자로서 법 제62조제5항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이고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지원시기)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1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한 지원대상자 중에서 노인가구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 선정 시 법 제12조에 의한 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공단에서는 지원대상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목적 내에서만 일반문서 또는 전자문서 등의 수단으로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사용 할 수 있다.

제5조(조사 실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변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 사항,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료 지급)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공단에서 지정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및 기타 조례 등에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받고 있는 경우, 그 지원액 또는 경감액을 차감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체납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구청장은 보험료가 지원된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에서 보험료 납입사실을 통보한 경우 등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가 건강보험료 월 10,000원 미만의 저소득 노인가구에 시비보조금(50%)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음
- 이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더 많은 저소득 노인가구에 혜택의 폭을 넓혀주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원대상의 변경 (제2조)
 - 보험료 월 6,000원 미만에서 월 10,000원 미만으로 변경
- 대상자 선정의 구체화 (제4조)
- 보험료 지급방법 신설 (제6조)
 - 타법령, 기타조례로 지원 또는 경감받는 금액은 지급제외
 - 보험료 체납액은 지원 하지 않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7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89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의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과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으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식품비”라 함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 시설로 한다. 다만, 직영급식 실시대상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농·수·축산물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 및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금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식재료에 안전한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 지원금은 구청장이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학교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확보와 학교급식 지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 및 유치원은 관할 지역 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은 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계획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부구청장, 학교급식 지원업무 관련 국장 및 기획감사실장
2.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청 관련 과장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의원 2명
4. 학부모단체 추천인 2명
5. 동부교육청에서 추천한 교사 2명
6. 영양사 단체에서 추천한 자 1명
7. 친환경 농업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 1명
8. 기타 학교급식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학교급식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⑦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규모와 내역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 위원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9조(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보고한 사용내역 및 정산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자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은 자는 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④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과 관할지역 교육감 및 교육장은 지원금이 안전
전한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에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하게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한 때
2. 지원금을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3. 기타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 우리구 관내 학교급식 식재료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산물 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제1조)
- 학교 및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하여 지원(안 제3조)
-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중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요경비 일부 지원(제4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7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89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로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제1항 중 “25인”을 “20인”으로 하고,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홍보실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과장, 위생과장, 교통과장, 주차관리과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세무1과장”으로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1조(의사청취) 중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2조(심의안제출)제1항 중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송부되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위원회 위원의 외부 위원 비율을 높임과 동시에 물가안정대책 및 심의대상 공공요금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장 등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 위원회 인원을 감원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세무1과장이 된다. (제4조)
- 실무위원회를 폐지한다. (제9조)
- 위원회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제12조)